

알 법(法)한 이야기



●임소망 변호사

캐나다 앨버타 대학에서 클래식 음악 석사 학위를, 한동국제법률대학원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받았고, 미국 워싱턴 DC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현재 생명윤리법과 국제인권법에 대한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해외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양한 법률에 대해 알아보는 알 법한 이야기에서는

그 두 번째 이야기로 '종교의자유회복법(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ct)'을 소개 합니다.



종교의자유회복법 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ct (RFRA)

미국 헌법과 종교의 자유

미국은 연방 수정 헌법 제1조에서 의회가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¹ 다시 말해, 미국 헌법 상의 ‘종교의 자유’란, 국민이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이 선택한 종교를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 받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미 헌법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호 하고 있는 미국에서 1993년에 『종교의자유회복법』을 연방법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을 굳이 제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미 헌법으로 보장 받고 있는 종교의 자유를 또 보장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종교의자유회복법의 배경

시간을 거슬러 1990년대로 돌아가 미국 오리건 주에서 북미 원주민 토속 신앙을 가진 주 공무원이 자신의 종교 교리에 따라 종교 예식에서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페요테(peyote)**라는 선인장의 추출물을 섭취한 것 때문에 주법에 따라 해고된 사건²이 있었습니다. 그는 실업 보험 혜택 또한 주 정부로부터 지급 받지 못했는데, 당시 페요테 복용은 주 법에서 범죄였고 이로 인해 해고가 되었기 때문에 수혜 자격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는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연방대법원은 비록 이러한 마약의 흡입이 특정한 종교적 동기에 의해서 한 행위 일지라도 그것이 마약 흡입을 적법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판결이 있고 난 후, 미국 연방 의회에 종교의 자유 보장 강화 필요성이 대두 되었고, 무너진 종교의 자유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새로운 법을 제정 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1993년 종교의자유회복법(이하 ‘종교회복법’)입니다. 종교회복법은 두 가지를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의 간섭을 줄일 수 있는 – 위 오리건주 페요테 사건에서 폐지한 – ‘중대한 법익 기준’³을 모든 종교 행위의 자유에 관한 사건들에서 다시 회복하여 국가가 중대한 법익이 없는한 종교 행위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개인이 국가로 인해 종교 행위의 자유가 상당히 침해 받은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청구권과 방어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1 U.S. Const. amend. I.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2 Employment Division v. Smith, 494 U.S. 872 (1990).

3 Sherbert v. Verner, 374 U.S. 398 (1963); Wisconsin v. Yoder, 406 U.S. 205.

종교의자유회복법의 내용

연방 종교회복법의 내용을 보면 정부는 개인의 종교 실행의 자유에 있어서 비록 일반적인 현행법들이 적용 되어 자유를 제한해야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개인에게 막대한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지 정부의 효율성과 정치적인 이익만을 추구하여서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면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합니다. 또한 개인의 종교적 신앙과 정부가 얻는 법익에 대해 이익 형량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량의 기준은 바로 이러한 규제가 나라에 ‘중대한 법익’을 가져오는가 여부입니다. 이 기준을 ‘엄격심사기준^{Strict Scrutiny}’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① 만약, 주 정부에 중대한 이익이 된다면, 종교 실행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② 이러한 제한은 중대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가장 덜 제한적이어야 합니다.

이 ‘엄격심사기준^{Strict Scrutiny}’은 대개 법원들이 인종 차별이나 표현의 자유 제한에 관련된 사건들에 적용시켜왔습니다. 종교의 자유 또한 그와 같은 사례들과 같은 수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침해 당한 사람들은 종교회복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적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교적 양심을 가진 사업가가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대립되는 연방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할 수도 있고, 교회나 회교 사원 같은 종교단체가 한 종교 교리에 따른 행위에 대해 차별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을 때 방어 차원으로 종교회복법의 보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원래 종교회복법은 연방법으로서 자유로운 종교 행위에 대해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주 정부의 침해도 방지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1997년 연방대법원은 본 시 대 플로레스 *City of Boerne v. Flores* 사건⁴에서 종교회복법은 연방 정부에만 적용이 되고 주 정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다수의 주 의회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주 정부가 종교 행위의 자유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는 주 차원의 종교회복법을 제정하기 시작하였고, 대부분 연방 종교회복법을 기초로 하여 제정을 하였습니다. 연방 차원의 종교회복법이 세워진 1993년 이후로 현재까지, 총 21개 주가 주 차원의 종교회복법을 입법하는데 성공했고, 10개주는 법을 제정하지는 않았지만 주 법원이 종교회복법과 유사한 효력이 있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판례법을 통해 종교의 자유를 두텁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종교회복법 또는 그와 유사한 판례법상의 보호장치를 갖춘 주들은 대부분이 소위 **바이블-벨트**^{Bible belts}라고 불

4 *City of Boerne v. Flores*, 521 U.S. 507 (1997).

5 바이블 벨트: 기독교가 강한 미국 남부와 중서부 지대 [옥스퍼드 어드밴스드 러너 영한 사진]

리는 기독교 성향이 강한 남부 지방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에서는 많은 종교 단체들과 종교인 사업가나 개인들이 종교적 이유로 채용을 제한하거나 용역 제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설 곳이 줄어들고 있는 종교의 자유

불과 3년 반 전인 2015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는 동성혼을 합법화 하는 역사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여파로 2015년 한 해에만 총 16개주가 종교의 자유 회복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동성혼 합법화 판결이 차별금지법과 함께 동성애에 대한 종교적 표현의 자유와 종교 교리에 따른 행위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어 종교인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우려가 컸기 때문입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 된 곳에서는 직장, 학교, 공공장소에서 종교적인 신념에 따른 행위와 표현은 남에게 불편함과 괴롭힘이 될 수 있고, 차별이라는 이유로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종교적 신념에 근거하여 세워진 학교와 기업은 물론, 교회나 성당 같은 종교시설 안에서도 동성애와 관련하여 종교적 신념을 표현할 경우에 차별이라는 이유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실례로 미국 아이다호 주에서 웨딩채플을 운영중인 한 목사가 동성커플에게 웨딩 주례를 거부하면 교도소에 투옥되거나 벌금을 내야 한다며 시 관계자들에게 협박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⁶ 미국과 달리 여러 개의 차별금지 관련 개별법을 묶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인 ‘평등법^{Equality Act}’을 제정한 영국에서는 한 여성이 같은 직장 동료에게 성경책을 주었다가 종교적 괴롭힘이라는 이유로 정직 당한 사건이 있었고, 길거리에서 동성애는 부도덕한 행위라는 내용의 설교를 하던 목회자가 차별과 혐오표현이라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곳에서는 직장, 학교, 공공장소에서 종교적인 신념에 따른 행위와 표현은 남에게 불편함과 괴롭힘이 될 수 있고 차별이라는 이유로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6 Knapp v. City of Coeur d'Alene, 172 F.Supp. 3d 1118.

7 Wastenev v. East London NHS Foundation Trust, UKEAT/0157/15/LA.

결론

종교의 자유는 미국에서 헌법으로 보장되는 기본권으로서 침해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권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기본권 중에서 가장 많은 공격을 받고 자유를 빼앗겨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종교와 관련된 기본권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에서도 종교의 자유를 위협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종교적 설립이념을 지키기 위해 설립이념과 반대되는 행위를 한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불허한 종립대학교들에게 국가인원위원회는 종교적 설립이념을 버리면서라도 학생의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고 차별재발방지대책까지 세우라는 권고를 내렸습니다. 국가가 성윤리에 반하는 행위임에도 차별 받지 않을 권리만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해 주면서, 종립학교의 종교의 자유는 그에 따라 제한이 되어도 문제가 없다는 편향된 판단을 한 것인데, 종립사학에게 있어 건학이념에 따른 종교 행위의 자유 보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간과한 결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평등과 자유가 균형이 잘 이루어진 건강한 법들이 제정 되었시길 바라봅니다.

